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적합성심사 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 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4항제12호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평가”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개인 정보통합관제시스템”을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센터”를 “의료정보보호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정보보안”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으로 한다.

제8조제7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5호 중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을 “가임력 등 생식건강 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령”을 “국내외 입양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내외 입양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10의5. 입양 관련 업무수행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0항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총괄

7.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완화의료제도”를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11호 중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공립병원”을 “국공립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4호 중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제9호를 삭제한다.

27. 호스피스사업의 운영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평가

제13조제5항제26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원장이 겸한다”를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44”를 “847”로, 일반직 계 “835”를 “838”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8”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를 “1”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5”를 “59”로,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82”로,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846”을 “849”로, 일반직 계 “837”을 “840”으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8”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를 “1”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5”를 “59”로,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84”를 “282”로,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68”을 “69”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4”를 각각 “33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321”을 “323”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2”를 각각 “1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76”을 “177”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4”를 각각 “185”로, 3급 또는 4급 이하 “181”을 “182”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를 “3”으로, 간호주사보 “15”를 “17”로, 간호조무주사보 “3”을 “4”로, 보건서기 “3”을 “2”로, 간호서기 “32”를 “30”으로, 간호조무서기 “6”을 “5”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2”를 “13”으로, 행정서기·보건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을 “5”로 하며, 행정서기·보건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다음에 “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 2”를 신설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를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⑬ (생 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⑭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공공기관 <u>개인정보보호 관</u> <u>리수준 진단</u> 등 점검 및 <u>평가</u>	12. ----- <u>개인정보 보호수준</u> <u>평가</u> ----- <u>지원</u>
13. <u>개인정보통합관계시스템</u> 구 축 및 운영	13. <u>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분</u> <u>석시스템</u> -----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u>민간의료기관침해사고대응</u> <u>센터</u>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15. <u>의료정보보호센터</u> ----- ----- --
16. 그 밖에 <u>정보보안</u> 및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사항	16. ----- <u>보건복지부와 그 소</u> <u>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u> <u>안</u> -----
⑮ · ⑯ (생 략)	⑮ · ⑯ (현행과 같음)
제8조(인구 · 사회서비스정책실)	제8조(인구 · 사회서비스정책실)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⑦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
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
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9. (생략)

⑧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4. (생략)

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
한 사항

26. ~ 28. (생략)

⑨ 아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입양특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생략)

<신설>

10의2. · 10의3. (생략)

<신설>

10의4. 입양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11. ~ 21. (생략)

<삭제>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⑧ -----
-----.

1. ~ 24. (현행과 같음)

25. 가임력 등 생식건강 증진--

26. ~ 28. (현행과 같음)

⑨ -----
-----.

1. ~ 8. (현행과 같음)

9. 국내외 입양 관련 법령 ----

10. (현행과 같음)

10의2. 국내외 입양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10의3. · 10의4. (현행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과 같음)

10의5. 입양 관련 업무수행 기
관·단체에 관한 사항

<삭제>

11. ~ 21. (현행과 같음)

⑩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 및 자립정책 기획·총괄

23.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5.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26.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 28. (생략)

⑪ (생략)

⑫ 청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신설>

⑩ -----
-----.

1. ~ 2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4.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수립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22. · 23. (현행 제27호 및 제28호와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
-----.

1. ~ 5. (현행과 같음)

6.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이하 “자립준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생 략) ⑬ ~ ⑳ (생 략)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⑫ (생 략)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 략) 27. <u>완화의료(緩和醫療)전문기관</u>의 지정·지원 및 질 평가 28. <u>완화의료제도</u>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29. · 30. (생 략)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u>국립정신건강센터</u> 및 <u>국공</u>	<u>청년”이라 한다)의 실태조사</u> <u>및 자립정책 기획·총괄</u> 7. <u>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u> 등에 관한 사항 8. <u>자립수당 정책 기획 및 사업</u> 운영에 관한 사항 9. <u>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u> 등에 관한 사항 10. <u>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u>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6호와 같음) ⑬ ~ ㉑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26. (현행과 같음) 27. <u>호스피스사업의 운영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평가</u> 28. <u>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u> ----- 29 · 30. (현행과 같음) ⑭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국립병원</u>-----
--	--

<u>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u> 총괄 및 조정 ⑮ (생 략) ⑯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u>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u> 에 관한 사항 15. ~ 26. (생 략) ⑰ 혈액장기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u>제대혈위원회 운영에 관한</u> <u>사항</u> 10. ~ 17. (생 략) ⑱ · ⑲ (생 략)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④ (생 략) ⑤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 략) 26. <u>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u> <u>책의 수립 및 시행</u> 27. ~ 30. (생 략) ⑥ ~ ⑩ (생 략)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국립재	----- ----- ⑮ (현행과 같음) ⑯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u>----- ----- 15. ~ 26. (현행과 같음) ⑰ -----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10. ~ 17. (현행과 같음) ⑱ · ⑲ (현행과 같음) 제13조(건강정책국)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 -----. 1. ~ 25. (현행과 같음) <u><삭 제></u> 27. ~ 30.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재활연구소) ① -----
---	--

활원에 재할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u>원장이 겸한다.</u> ② (생략)	----- --- <u>보건연구원 또는 공업연구원으로 보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44</u>	<u>847</u>	+3
·	·	·	
·	·	·	
일반직 계	<u>835</u>	<u>838</u>	+3
·	·	·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8</u>	<u>20</u>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7</u>	<u>56</u>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u>2</u>	<u>1</u>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 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5</u>	<u>59</u>	+4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284</u> · ·	<u>282</u> · ·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	<u>68</u> · ·	<u>69</u> · ·	+1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46</u>	<u>849</u>	+3
·	·	·	
·	·	·	
일반직 계	<u>837</u>	<u>840</u>	+3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8</u>	<u>20</u>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7</u>	<u>56</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u>2</u>	<u>1</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 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55</u>	<u>59</u>	+4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284</u> · ·	<u>282</u> · ·	-2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 주사 · 전산주사 · 약무주사 · 시 설주사 · 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 ·	<u>68</u> · ·	<u>69</u> · ·	+1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국립정신건강센터			
총계	<u>334</u>	<u>336</u>	+2
일반직 계	<u>334</u>	<u>336</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1</u>	<u>323</u>	+2
·	·	·	
2. 국립나주병원			
총계	<u>182</u>	<u>183</u>	+1
일반직 계	<u>182</u>	<u>183</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76</u>	<u>177</u>	+1
·	·	·	
3. 국립부곡병원			
총계	<u>184</u>	<u>185</u>	+1
일반직 계	<u>184</u>	<u>18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1</u>	<u>182</u>	+1
·	·	·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 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u>2</u>	<u>3</u>	+1
·	·	·	
·	·	·	
간호주사보	<u>15</u>	<u>17</u>	+2
·	·	·	
·	·	·	
간호조무주사보	<u>3</u>	<u>4</u>	+1
·	·	·	
보건서기	<u>3</u>	<u>2</u>	-1
·	·	·	
·	·	·	
간호서기	<u>32</u>	<u>30</u>	-2
·	·	·	
·	·	·	
간호조무서기	<u>6</u>	<u>5</u>	-1
·	·	·	
·	·	·	

[별표 5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 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	<u>12</u> ·	<u>13</u> ·	+1
행정서기·보건서기·시설서기 ·공업서기·사서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6</u>	<u>5</u>	-1
<u>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시설 서기보·공업서기보</u> · ·	<u><신 설></u> · ·	<u>2</u> · ·	+2
<u>기계운영서기보</u> ·	<u>1</u> ·	<u><삭 제></u> ·	-1
<u>열관리운영서기보</u> ·	<u>1</u> ·	<u><삭 제></u> ·	-1